

[별 표] <개정 2017. 7. 26.>

금융회사등 감독·검사기관의 장(제4조관련)

1. 감사원장
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3. 금융감독원장
4. 삭제 <2008.3.3>
5. 삭제 <2008.3.3>
6. 삭제 <2008.3.3>
7.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
8.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
9. 삭제 <2008.3.3>
10. 산림조합중앙회장
11. 삭제 <2008.3.3>
12.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
13. 새마을금고중앙회장
14.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